KOSHA GUIDE

C - 16 - 2016

(다) 운반 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하며,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한다.

(3) 운반작업

- (가)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적치하며,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통 로 위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.
- (나) 자재는 작업부위에 필요한 양만 적치하도록 한다.
- (다) 자재는 던지지 않도록 하며 비계의 작업발판 상부 적치시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만을 올려놓도록 하되 해당 비계의 비계기둥 사이 허용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(예: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의 적 재하중이 3,920N(400kgf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)
- (라)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,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.

4.2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

- (1)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진동기, 휘니샤 등 사용 기계·기구에 대한 감전, 협착 등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.
- (3)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관리감독자는 작업의 위치 및 장소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장 주변 슬래브단부,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(위험표지 부착)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2012-95호(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)에 따른다.